

第159回國會

政治關係法審議 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時 1992年10月31日(土)
場所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動力資源委員會)

議事日程

1. 大統領選舉法中改正法律案
2. 選舉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
3.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4. 大統領選舉法改正에 관한請願
5. 選舉管理委員會法改正에 관한請願

審査된案件

- | | |
|--|----|
| 1. 大統領選舉法中改正法律案 | 1面 |
| 2. 選舉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 | 1面 |
| 3.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 3面 |
| 4. 大統領選舉法改正에 관한請願(張基旭·邊精一議員의 紹介로 提出) | 5面 |
| 5. 選舉管理委員會法改正에 관한請願(張基旭·邊精一議員의 紹介로 提出) | 5面 |

(10時11分 開議)

○委員長 申相式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를 開議합니다.

오늘 報告事項은 報告를 생략하고 會議錄에 掲載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事項은 지난 10月12日 第2次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의 議決로 다섯 個 法案을 成案하기 위하여 두 個의 法案審議班을 구성하고 8회에 걸쳐 各 法案에 대한 진지한 審議를 하였던 바 大統領選舉法 選舉管理委員會法과 政治資金에 관한法律등 3個 法案은 各 交涉團體間의 合意로 成案하였으며 地方自治法과 國家安全企劃部法에 대하여는 各 交涉團體間에 合意를 보지 못하고 추후 계속 協議하기로 合意하였습니다.

各 審議班에서 合意되어 成案한 法案을 議事日程으로 上程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 大統領選舉法中改正法律案
2. 選舉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

(10時14分)

○委員長 申相式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統領選舉法中改正法律案과 議事日程 第2項 選舉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을 일괄하여 上程합니다.

이 案件들을 審議해온 法案審議 第2班의 朴相千委員 나오셔서 審議結果를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相千委員 政治特委 法案審議 第2班 朴相千委員입니다.

法案審議 第2班의 審議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法案審議 第2班은 지난 10月12日 第2次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大統領選舉法 選舉管理委員會法 및 國家安全企劃部法을 審議하기 위하여 民主自由黨의 金重緯委員 李仁濟委員 黃潤欽委員, 民主黨의 鄭濊浩委員, 統一國民黨의 車秀明委員과 本委員會를 포함한 6人으로 構成되어 '92年10月12日 부터 10月30日까지 8회에 걸쳐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서 國會에 建議한 大統領選舉法 및 選舉管理委員會法의 改正意見과 各 交涉團體에서 提示한 國家安全企劃部法의 改正意見에 대하여 진지하게 審議하였습니다.

특히 同 法案들을 審議함에 있어서 民主

自由黨의 姜在涉委員 金榮秀委員, 民主黨의 姜喆善委員, 統一國民黨의 趙精一委員 등이 교대로 審議에 參與하여 法案審議에 기여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먼저 大統領選擧法에 대한 審議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大統領選擧法은 지난번 構成된 바 있는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에서 合意한 事項인 公明選擧保障裝置의 強化, 選擧運動方法의 擴大, 選擧의 墮落·過熱防止, 選擧公管制의 擴大, 不在者投票의 管理強化, 기타 國會議員選擧法과의 體系와 均衡을 기하기 위한 事項等 約 110個 事項에 대하여는 當 審議班의 意見으로 그대로 採擇하기로 하였고 지난번 特委에서 合意에 이르지 못한 9個 事項에 대해서도 신중한 審議를 한 결과, 配付해 드린 油印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大統領選擧法과 選擧管理委員會法은 그 改正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自體 改正案을 立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審議班이 合意한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統·里·班長과 鄉土豫備軍 小隊長級 이상 幹部가 選擧運動員등이 되는 경우에는 大統領의 任期滿了日 100日 以前에 解任되어야 하고, 選擧日後 6月 以內에는 從前의 職에 復職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候補者의 經歷·政見 및 政黨의 政見·政策에 대한 放送廣告制度를 新設하여 費用은 政黨 또 候補者의 負擔으로 하되 選擧運動期間中에 TV·라디오 放送施設別로 각 5回 以內에서 每回 1分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안 放送廣告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制限對象을 擴大하고 그 制限行爲를 強化하여 鄉土豫備軍 小隊長級 以上の 幹部, 統·里·班長, 地方自治團體 投資機關의 任·職員, 特別法에 의해서 設立된 國民運動團體 즉 새마을運動協議會, 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 韓國自由總聯盟 등 3個 團體의 常勤 任·職員과 그 中央會長은 選擧運動期間中 特定 政黨 또는 候補者의 業績을 弘報하거나 法定以外의 金品을 提供하거나 選擧運動의 企劃 및 그 企劃의 實施에 關與하거나 特定 候補에 대한 有權者의 支持度를 調査하거나 當장 시행하지 아니할 公共事業의 起工式을

舉行하는 行爲 또 休暇를 얻어서 關聯機關을 訪問하는 行爲등을 制限하였으며, 넷째로 開票區別로 하는 演說會 외에도 인접한 둘 以上の 開票區의 演說會를 한 場所에서 共同開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에서 投票用紙에 하는 加印하는 주체를 現在 國會의 多數議席順에 의한 第1黨과 第2黨에서 第3黨이 推薦한 委員까지 加印토록 改正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選擧年齡引下問題와 選擧運動方法의 包括的 制限禁止規定 廢止 기타 문제에 있어서도 論議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現行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以上과 같은 合意事項을 토대로 해서 大統領選擧法中改正法律案을 成案하게 된 것입니다. 이 改正法律案은 大統領選擧의 重要性을 감안하여 候補者·政黨 및 國民이 보다 公明正大하게 選擧를 치를 수 있고 選擧管理機關으로 하여금 選擧管理에 萬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選擧運動은 政見·政策의 對決이 되도록 그 方法을 改善하고 公明選擧를 保障하기 위한 여러가지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는 등 現行法 가운데 지금까지의 各種選擧에서 나타난 問題點을 改善·補完하려고 한 것입니다.

改正法律案의 主要骨子を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드린 油印物을 參照해 주시고 本 審議班이 成案한 대로 委員會案으로 採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選擧管理委員會法에 대한 審議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대하여는 지난번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에서 合意한 바 있는 選擧管理委員會의 選擧法違反行爲에 대한 監視·團束權 賦與, 選擧管理委員會의 關係行政機關等과의 事務協助機能의 強化, 國會에 대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關係法 制定·改正등에 관한 意見提出權 賦與, 選擧研修院設置 등 事務機構의 補強, 選擧管理委員會 所屬公務員의 獨自的인 採用 및 充員權 인정등에 대하여는 當 審議班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기로 合意하였고, 나머지 未合意된 事項에 대하여도 그동안 진지한 審議를 거쳐 委員全員이 만장일치로 合意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合意된 內容을 말씀드리면 選擧管

理業務에 관한 協議를 關係部處와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 事務總長을 國務委員級으로 승격시키고 事務次長을 次官級으로 職級을 上向調整하는 등 選舉管理委員會 事務機構를 擴大改編하는 한편 委員長을 補佐하는 常任委員이 委員長의 命을 받아 事務處와 事務局의 事務를 監督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選舉管理委員會 所屬公務員과 派遣 및 委囑公務員에 대하여 特別獎勵金을 支給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當 審議班에서는 選舉管理委員會의 組織 및 機能의 擴大·強化를 통하여 各種 選舉의 效率的인 管理를 期할 수 있도록 하는데 同法 改正案 立案의 役점을 두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改正法律案의 主要骨子を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內容을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照해 주시고 本 審議班이 成案한대로 委員會案으로 採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國家安全企劃部法에 대한 審議結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國家安全企劃部法에 대하여는 各 交涉團體 別로 改正事項에 관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부문에 異見이 있었습니다.

主要爭點事項은 國家安全企劃部の 職務範圍, 支部設置, 職員의 政治活動禁止範圍, 國會에 대한 證言, 資料提出 또는 答辯拒否의 限界등에 관한 事項이었습니다.

특히 國會에 國家安全企劃部를 所管으로 하는 情報委員會의 設置, 現行 國家安全企劃部法에 규정되어 있는 情報調整委員會의 廢止 및 國家安全企劃部職員의 中立性 保障에 관하여는 深度있게 論議하였고 國會에 情報委員會를 設置하는 문제는 상당한 意見接近이 있었으나 國家安全企劃部の 職務範圍등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는 鮮격한 視角差異가 있었습니다.

현재 政府와 民自黨에서는 國家安全企劃部가 가지고 있는 搜查權의 縮小 또 政治查察問題, 關係機關對策會議 各級 行政機關에 派遣하고 있는 調整官의 廢止問題, 各級 行政機關에 대한 保安監查問題 이러한 여러가지 機能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機能은 軍事革命 당시에 安企部가 發足할 때 政府의 統制와 國民 監

視를 위해서 부여했던 機能이기 때문에 앞으로 國家安全企劃部가 國家 情報機關으로서의 새로운 機能과 역할을 擔當함에 있어서는 固守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權限이라고 하는 것이 民主黨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當 審議班에서는 國家安全企劃部法의 改正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協議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各 交涉團體에서 提示한 改正意見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當 審議班의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相式 그러면 大統領選舉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審議班에서 報告한 내용대로 委員會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選舉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審議班에서 報告한대로 委員會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0時27分)

○委員長 申相式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을 上程합니다.

이 法律案을 審議하신 法律案審議 第1班의 金重緯委員 나오셔서 審議結果를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重緯委員 民主自由黨의 金重緯委員입니다.

지난 여름 많은 다른 委員들이 쉬고 있는 時間에도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좋은 法案을 成案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모두들의 노력의 結果가 오늘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法案審議第1班의 審議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法案審議第1班은 지난 10月12日 第2次 政

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交涉團體 幹事간의 합의로 地方自治法과 政治資金法을 成案하기 위하여 民主自由黨의 本委員 康容植委員 姜在涉委員, 民主黨의 吳坦委員 鄭職浩委員, 國民黨의 曹駢鉉委員 이상 6人으로 構成되어 '92年10月25日부터 10月30日까지 4次에 걸쳐 각 交涉團體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토대로 충분히 討議하고 진지하게 審議를 하였습니다.

먼저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에 대한 審議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審議班에서는 政治資金의 募金을 보다 원활히 하고, 政黨의 발전과 각종 公職選舉의 公營化를 기하는 方向에서 同法을 改正하기로 하고 改正案을 成案하여 提案하게 되었습니다.

그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政治資金의 원활한 募金을 위하여 後援會의 集會와 廣告에 의한 募金時 寄附者가 姓名·住所·住民登錄番號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寄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匿名寄附時 寄附할 수 있는 額數의 限度를 1回 100萬원 이내로 하였고, 匿名寄附者는 免稅惠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앞으로 大統領選舉運動이 종전과 같은 群衆集會 중심의 選舉運動에서 탈피하여 費用이 다소 더 들더라도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활용하여 政策對決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選舉公營制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選舉時 政黨에게 지급되는 國庫補助金을 現행 選舉權者 1인당 300원에서 600원으로 上向調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本 審議班에서 成案한 대로 委員會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政治資金法을 成案하는 과정에서 民主黨에서 提示한 案으로 쿠폰制와 그 다음에 寄託金制 廢止問題에 대해서는 상당한 論議를 거듭했습니다. 是는 여러가지 副作用이 우려되고 寄託金制의 廢止問題는 政治資金法 制定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論議에서 保留하였습니다.

다음은 地方自治法에 대한 審議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審議班에서는 同 法案의 成案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結果 政府 및 各

交涉團體에서 제시한 總 31個 사항중 地方議會議員의 직무상 傷害補償의 法的 根據 마련, 追加更正豫算案의 修正豫算 提出權의 明文化등 28個 사항에 달하는 대부분의 條項에 대하여는 合意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國政監査權의 地方議會에의 위임문제, 地方自治團體長選舉 實施時期問題등 3個 사항에 대하여서는 交涉團體間에 合意를 보지 못해 成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委員님들과 더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各 交涉團體間에 協議해 나가기로 合意하므로서 여러분과 더불어 계속 合意할 수 있는 機會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本 審議班에서 論議된 合意事項과 未合意事項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油印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相式 그러면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中 改正法律案을 審議班에서 報告한대로 委員會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邊精一委員 異議가 있습니다.

○委員長 申相式 邊委員 말씀하세요.

○邊精一委員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中 改正法律案의 內容中에 合意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조금 異議가 있습니다.

選舉時에 選舉가 있는 해에 國庫補助金을 300원에서 600원으로 增額하는 부분에 관해서 마지막 會議인 어제 會議에 제가 參席을 했습니다. 是는 그 때 이미 그 전날 合意가 다 되었다. 是에서 기왕 合意되었다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 是에서 저도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후에 調査해 본 바에 의하면 그와같은 合意가 있었는지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와같은 合意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제 言論에 報道가 되었습니다. 是는 國民들의 視角이 2倍로 올랐다. 是는 바람에 尙尙히 否定的인 視角이 많습니다. 是에서 金額을 다소 下向調整을 하든지 또는 金重緯委員께서 또 말씀이 제셨습니다. 是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관한 全般的인 우리나라의 政治發展을 위한 關係法律의 改正이라든지 등등을 論議할 수

있는 機構가 構成이 된다면 그런 機構를 통해서 漸進的으로 深思熟考해서 改善해 나가기로 하고 이 부분만은 달리 내용을 變更한다든지 또는 保留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黨의 입장입니다.

○委員長 申相式 邊委員 말씀의 뜻이 合意에 대한 金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분명히 節次에는 瑕疵가 없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各黨 幹事님 다 계시고 丁璋鉉委員이 參席을 하셨는데 물론 밤 새벽까지 했기 때문에 그동안 불일보러 다니시는 機會도 있고 해서 정확한 認識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원 올리는데 평상시 600원에 100원 選舉時에 300원 補助하는데 200원을 올리는 案이 상당히 논의가 되었는데 평상시 100원을 올리는 것은 현재 명분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選舉 때는 이번 우리 大統領選舉法을 改正하다 보니까 各 候補者가 選舉管理委員會에서 인정하는 金額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현재 여러가지 公營制 TV 新聞 廣告料가 올라가기 때문에 選舉 때 필요한 비용을 일부 올리는 것은 명분상 타당하지만 평상시 政黨活動하는데引上해서 補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選舉때만 300원하자 이렇게 合意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邊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金額을 合意했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하려면 지금 다시 停會를 하고 幹事會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合意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 나라 政治發展을 위한 機構를 만들어서 계속 연구하자 하는 데 대해서는 3黨幹事間에 合意된 事項도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合意된대로 通過를 시켜 주시고 國民黨의 의지는 速記錄에 올랐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崔在旭委員 國民黨에서 정하지 말자면 저희 黨으로서도 그것을 꼭 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왕 幹事間에 合意되었기 때문에 어머나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邊精一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申相式 감사합니다.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大統領選舉法改正에 관한 請願(張基旭·邊精一議員의 紹介로 提出)

5. 選舉管理委員會法改正에 관한 請願(張基旭·邊精一議員의 紹介로 提出)

(10時38分)

○委員長 申相式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統領選舉法改正에 관한 請願과 議事日程 第5項 選舉管理委員會法改正에 관한 請願을 일괄 上程합니다.

이상 2件에 대한 紹介議員의 趣旨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配付해드린 油印物로 代替하고, 오늘 이미 議決한바 있는 法案에 그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議事日程 第4項과 第5項, 이상 2件을 各各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各各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參 照)

大統領選舉法改正에 관한 請願
檢 討 報 告

1992.10. .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
專 門 委 員

一. 請願經緯

이 請願은 1992年8月17日 서울特別市서초구방배동725 이한빈(公明選舉實踐市民代表協議會 常任共同代表)外 2人으로부터 張基旭·邊精一議員의 紹介로 提出되어 1992年10月7日 當特別委員會에 回附되었음.

二. 請願要旨

1. 現行 大統領選舉法은 選舉運動의 自由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政治的表現의 自由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選舉運動의 自由가 擴大되는 방향으로 同法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內容임.

2. 現代民主國家에 있어서 選舉法의 基本理念은 自由와 公正性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현행 大統領選舉法은 選舉의 公正

性を 지나치게 내세워 選舉運動의 自由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또 하나의 이념인 政治的 表現의 自由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제는 選舉運動의 自由를 확대하는 方向으로 轉換하여 選舉를 均衡있고 調和롭게 치러야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되므로 大統領選舉法의 改正方向을 아래와 같이 提示하니 同法改正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는 請願임.

첫째, 選舉運動의 포괄적 制限規定을 폐지할 것

둘째, 選舉公營制 強化를 통하여 돈 덜쓰는 選舉風土를 정립할 것

셋째, 當選無效事由를 확대하고 選舉訴訟制度를 개선할 것

넷째, 選舉管理委員會의 權限을 확대할 것

다섯째, 軍不在者投票制度를 改善할 것

三. 檢討意見

本 請願의 內容을 요약설명하면,

첫째, 選舉運動의 自由를 擴大하고 政策對決爲主의 選舉運動이 되도록 誘導하려는 趣旨에서, 選舉運動의 主體와 方法上의 包括的 制限規定(第35條, 第36條)을 削除하고, 統·班·里長과 鄉土豫備軍의 소대장급이나 幹部가 選舉運動을 하려면 選舉日公休日 이전에 辭任하게 하는 동시에 이들이 選舉運動을 한 경우에는 選舉後 一定期間(3年間) 다시 復職하지 못하게 하며, TV·라디오등 大衆放送媒體를 통한 遊說機會를 擴大하고 候補者 또는 候補者가 指定한 政策立案責任者가 出演하는 TV·라디오 討論會를 義務의으로 열도록 法定化하며, 屋外演說會를 禁止하되 屋內演說會는 認定하고, 市場·역·대합실등 公共場所에서의 卽席演說을 허용하며, 懸垂幕에 의한 選舉運動方法은 廢止하고 新聞廣告와 더불어 放送廣告도 許容하며, 政見·政策資料集 1種과 小型印刷物 2種을 發行·配付할 수 있도록 하고 戶別 訪問禁止의 例外規定을 두어 印刷物의 戶別投入을 認定하며, 選舉期間을 現行 30日에서 21日로 短縮하고 選舉日公休日 이후 入黨 및 黨員團合大會를 禁止하며, 輿論調查實施自體는 許容하되 選舉日公休日 이후에는 그 結果의 發表를 禁止

하게 하고, 寄託金を 現行 政黨推薦候補 5千萬원과 無所屬候補 1億원에서 일률 3億원으로 引上調整하며, 投票用紙의 候補者印刷順位는 現行 政黨別 國會議員議席順에 의할 것이 아니라 추첨제에 의하도록 바라고 있음.

둘째, 돈 덜쓰는 選舉風土를 定立하고 選舉公營制를 強化하려는 趣旨에서, 選舉費用의 公開 및 監視의 強化를 위해 選舉管理委員會내에 選舉費用 監視·監督特別委員會를 設置하여 選舉費用의 收入 및 支出內譯을 定期的으로 同特別委員會에 報告하도록 하고, 이를 一般에게 즉시 公開하며, 放送演說會의 費用과 新設되기 바라는 選舉弘報物의 製作費用등을 國庫負擔으로 할 것을 바라고 있음.

셋째, 當選無效化事由를 擴大하고 選舉訴訟制度를 改善하려는 趣旨에서, 選舉事務長 또는 會計責任者가 選舉犯罪로 인하여 一定刑量 이상의 有罪判決을 받은 경우에 候補者의 當選도 無效化하는 條項을 新設하고 公訴時效期間을 現行 3月에서 6月로 調整하며, 裁判期間을 第1審은 公訴提起日로부터 6月以內에, 第2審 및 第3審은 前審判決의 宣告가 있는 날부터 각각 3月이내에 判決宣告를 마치도록 바라고 있음.

넷째, 不在者投票制度를 改善하려는 趣旨에서, 現行 郵便投票制를 維持하되 選舉權者의 現在 居所에서 實行되는 記票와 發送의 過程을 해당 地域選舉管理委員會의 管轄하에 두고, 軍不在者 投票의 實施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한 管外投票로 하면서, 特定部隊가 管外投票를 할 수 없는 特別한 事由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國防部와 選舉管理委員會, 각 政黨으로 構成된 機構에서 이를 檢討하도록 바라고 있음.

다섯째, 選舉管理委員會의 權限을 擴大하려는 趣旨에서, 選舉法違反行爲에 대한 中止·警告·是正命令 및 告發義務規定을 新設하고 代執行規定을 明文化하여 不法行爲에 대한 即時強制權을 明示하며, 不法宣傳物에 대하여 郵送의 中止를 要求할 수 있도록 하고, 選舉法違反行爲에 대한 確認·調査權을 賦與하여, 選舉管理委員會가 告發한 選舉犯事件에 대해 檢事が 公訴를 提起하지 않은 경우

選舉管理委員會가 裁定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하며, 一般有權者에게도 告發權과 裁定申請權을 認定하도록 하고, 選舉犯關東 및 處理結果의 回報을 義務化하며, 選舉事務등에 대한 指示·協助要求 根據를 具體的으로 明示하고, 이 法에서 大統領令으로 委任한 事項중 選舉管理委員會 所管事務는 選舉管理委員會 規則에 委任하도록 法令委任體系의 變更을 바라고 있음.

여섯째, 其他 事項으로서, 選舉權者의 年齡을 現行 20歲에서 19歲로 낮추고 視覺障礙者와 肢體不自由者들의 投票權을 實質的으로 보장하기 위한 裝置를 마련하여 달라는 것임.

이러한 請願의 內容중에는 이미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서 改正意見으로 提示한 內容과 類似한 內容이 적지 않은 바, 參考로 서로 類似하거나 同一한 事項을 살펴보면, 選舉運動의 包括的 制限規定 削除, 統·班·里長등의 選舉運動制限 및 一定期間 復職禁止, 放送廣告의 許容, 政見·政策資料集 및 小型印刷物의 發行·配付, 懸垂幕에 의한 選舉運動方法 廢止, 小型印刷物의 戶別投入 許容, 市場등 公共場所에서의 即席支持演說 許容, 選舉運動期間의 短縮, 輿論調查實施의 許容과 選舉日公告日이후의 發表禁止, 寄託金額數의 增額, 選舉費用의 收入 및 支出內譯의 選舉管理委員會에의 報告·公開, 軍不在者投票制度 改善方案으로서 該當地域選舉管理委員會 管轄하의 原則的 管外投票實施, 公訴時效期間의 延長, 選舉犯에 대한 裁判期間 明文化, 選舉管理委員會의 各種 選舉不正監親關聯權限 擴大 등임.

한편, 請願書에 提示된 새로운 內容이라고 볼 수 있는 事項을 살펴보면, TV·라디오 討論會의 義務的 實施를 위한 規定強化, 屋外演說會의 禁止 및 屋外演說會만 許容, 選舉管理委員會내에 選舉費用의 公開 및 監視의 權限을 가지는 特別委員會 設置, 選舉弘報物의 製作·配付 및 그 費用의 國庫負擔, 當選無效事由의 新設 또는 擴大, 特定部隊가 管外投票를 할 수 없는 特別한 事由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國防部와 選舉管理委員會·各政黨으로 構成된 機構에서 이를 檢討하는 方案, 一般有權者에 대해 選舉犯 告發

權과 裁定申請權限 賦與, 選舉權者의 年齡引下 등임.

이상에서 살펴본 內容과 같이 이 請願은 當特別委員會에서 現在 進行중인 大統領選舉法의 改正審議過程에 參考하여 審査·處理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思料됨.

四. 參考事項

本 請願은 1992年8月12日부터 定期國會開會전까지 活動한 바 있는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에 同年 8月22日 回附되었다가 앞의 請願經緯에서와 같이 當特別委員會에 다시 回附된 것임.

選舉管理委員會法改正에 관한 請願 檢 討 報 告

1992.10.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 專 門 委 員

一. 請願經緯

이 請願은 1992年8月17日 서울特別市은평구갈현동308-129 강문규(公明選舉實踐市民代表協議會 常任共同代表)外 2人으로부터 張基旭·趙精一議員의 紹介로 提出되어 1992年10月7日 當特別委員會에 回附되었음.

二. 請願의 要旨

1. 公正하고 效率的인 選舉管理를 위하여 選舉管理委員會의 政治的 中立성과 獨立性이 強化될 수 있도록 現行 選舉管理委員會法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內容임.
2. 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의 公正한 管理를 目的으로 設置된 機關이므로 이러한 職務를 效率的으로 遵行하기 위해서는 政治的 中立성과 機關의 獨立性이 確保되어야 하나 現行 選舉管理委員會法상의 機關構成方式이나 機關의 內部人事 및 豫算實態로서는 中立性이나 獨立性 確保가 어려워 選舉때마다 違法的 官權介入是非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바, 이러한 官權介入 是非를 줄이고 中立的이고 效

率의인 選舉管理를 위해 中央 및 下級 選舉管理委員會 構成의 中立성과 內部人事 및 豫算의 獨立성이 強化될 수 있는 方向으로 現行 選舉管理委員會法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請願임.

三. 檢討意見

本 請願은 選舉管理委員會의 政治的 中立성과 機關의 獨立성을 實質的으로 保障함으로써 公正하고 效率的인 選舉管理를 할 수 있도록 各級 選舉管理委員會 委員의 選任方式을 變更하고 人事와 豫算의 獨立성이 提高되도록 選舉管理委員會法을 改正해 달라는 趣旨로 보임.

請願의 內容을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 委員 9人중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을 國會交涉團體別로 各各 1人씩 推薦하되, 交涉團體의 數가 選出委員數(3人)를 超過하는 경우에는 議席數가 많은 交涉團體順으로 3人을 推薦하자는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國會交涉團體의 數가 3個 미만인 경우에는 國會에서 選出하는 人員이 2人 이하가 되어 憲法 第114條에서 반드시 3人을 選出하도록 하고 있는 規定과 맞지 아니하는 矛盾點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 및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委員중 6人은 國會交涉團體의 議席數比率로 推薦하고, 나머지 3人은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경우에는 法官을 반드시 포함한 地域社會의 德望있는 人士중에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選任하며,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경우에는 法官등을 포함한 地域社會의 德望있는 人士중에서 市·道選舉管理委員會가 選任하도록 해달라는 것으로서, 現行 選舉管理委員會法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면, 市·道選舉管理委員會 委員은 國會에 交涉團體를 構성한 政黨이 推薦한 者와 地方法院長이 推薦하는 法官 2人을 包含한 3人, 그리고 教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 중에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3人을 委囑하도록 하여 原則的으로 9人을 選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請願人的 意見에 따를 경우 選舉管理委員會委員 9人중 6人 즉, 3分の 2를 政黨에서 推薦하는 委

員으로 選任하게 되고 交涉團體의 議席數比率變動에 따라 選舉管理委員會委員의 政黨別 構成比率이 變動되는 등 選舉管理委員會의 政治的 中立성이 保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愼重한 檢討가 必要하다고 생각됨.

그리고 市·道選舉管理委員會 委員중 3人을 地方法院長이 推薦하도록 되어 있는 現行規定을 削除하는 대신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직접 法官 1人 이상을 市·道選舉管理委員會 委員으로 選任하도록 改正하는 것은, 오히려 法官을 選舉管理委員會 委員으로 選任하기 어렵게 하는 結果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도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는, 選舉管理委員會의 內部人事와 豫算에 있어서 憲法이 許容되는 範圍內에서 獨立성을 保障하여야 하며, 특히 選舉管理委員會의 豫算策定은 行政府가 豫算을 編成하여 國會에 提出할 때 選舉管理委員會의 意見書를 반드시 添附하도록 하여 國會가 豫算을 審議·確定함에 있어서 이 意見書를 參考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意見を 提示하고 있음.

먼저 內部人事權에 대하여 살펴보면, 選舉管理委員會法 第15條第11項 내지 第13項에서 選舉管理委員會 所屬公務員의 任免權·定員 및 分掌事務에 관한 規則制定權등 어느 정도의 人事上 獨立성이 부여되어 있으나, 다만 國家公務員法上 國會와 法院은 行政府로부터 人事行政上 完全한 獨立機關의 地位를 부여받고 있는 것에 비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獨自的인 中央人事管掌機關 또는 採用試驗實施機關의 地位나 權限 등을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人事行政上 完全한 獨立機關이 되어 있지는 못하고 있는 實情인 바, 이에 대하여는 같은 獨立機關인 憲法裁判所, 監査院등과 政府人事體系의 全體的 均衡을 감안하여 檢討되어야 할 事項으로 思料됨.

다음 豫算上 獨立성에 대하여 살펴볼 때, 選舉管理委員會法 第18條에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經費는 獨立하여 國家豫算에 計上하고 그 經費중에는 豫備금을 둔다”라고 하여 國會·法院·憲法裁判所·監査院과 동일한 豫算上 獨立性保障 規定을 두고 있고, 또한 豫算會計法(第29條 및 第31條第10號)에서도 政府가 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

委員會・監査院의 歲出豫算要求額을 減額할 때에는 國務會議에서 當該 獨立機關의 長의 意見을 求하여야 하며, 獨立機關의 豫算要求額을 減額하였을 때에는 그 削減理由와 當該 獨立機關의 長의 意見書를 國會에 提出하는 政府豫算書에 添附하도록 하고 있는바, 中央選舉管理委員會를 포함한 獨立機關의 豫算減額時의 意見書添附는 이미 法定化 되어 있는 事項이며, 이를 더욱 強化・改善하는 問題는 國會・法院・憲法裁判所등의 다른 獨立機關과 均衡을 維持하여야 할 事項이므로 이 역시 慎重한 檢討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상에서 살펴본 內容과 같이 이 請願은 當 特別委員會에서 現在 進行중인 選舉管理委員會法의 改正審議過程에 參考하여 審査・處理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思料됨.

四. 參考事項

本 請願은 1992年8月12일부터 定期國會開會전까지 活動한 바 있는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에 同年 8月22日 回附되었다가 앞의 請願經緯에서와 같이 當特別委員會에 回附된 것임.

特委에 委任된 5個法案中 地方自治法과 國家安全企劃部法은 成案하지 못하였으나 未合意部分에 대하여는 各 交涉團體間에 계속 協議하기로 合意하였습니다.

이번 本特委에서 國民들의 관심이 많은 大統領選舉法등 3個法案을 各 交涉團體間에 合意로 成案하게 된 것은 大統領選舉에 즈음하여 選舉의 公正性과 中立性을 保障해야 한다는 時代的 요청에 各 交涉團體가 인식을 같이한 結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政治・文化發展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政治狀況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地方自治法, 國家安全企劃部法등 政治關係法을 계속적으로 研究・檢討할 수 있는 機構를 國會內에 常設로 구성할 것을 建議하자는데 幹事間의 合意가 있었음을 報告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定期國會중이라 常任委員會 活動 등으로 무척 바쁘신데도 불구하고하시고 매일 會議에 참석하여 晝夜로 진지하게 論議하여

주신데 대하여 委員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特委活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여 주신 關係 職員에게도 그 노고를 마음속 깊이 致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40分 散會)

○出席委員

申 相 式	姜 在 涉	金 榮 秀
金 榮 珍	金 重 緯	李 仁 濟
崔 在 旭	黃 潤 鎭	姜 喆 善
朴 相 千	吳 坦 坦	鄭 瓊 浩
趙 精 一	丁 璋 鉉	車 秀 明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石 斗 洙
立 法 審 議 官	宋 金 同
立 法 審 議 官	朴 奉 國

【報告事項】

○特別委員變更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政治關係法審議特別	車 秀 明	李 浩 正	統一國民黨

(10月13日字)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政治關係法審議特別	李 浩 正	車 秀 明	統一國民黨

(10月14日字)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政治關係法審議特別	金 璋 鎬	吳 坦 坦	民主黨

(10月26日字)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政治關係法審議特別	丁 璋 鉉	曹 駟 鉉	統一國民黨

(10月27日字)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政治關係法審議特別	曹 駟 鉉	丁 璋 鉉	統一國民黨

(10月30日字)